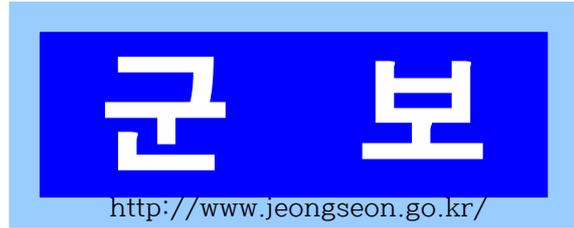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15호 2017. 4. 5.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7-3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1
- 정선군고시 제2017-42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3
- 정선군 고시 제2017-47호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7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7-243호 2017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11
- 정선군 공고 제2017- 245호 수용(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13
- 정선군 공고 제2017-24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의견청취 공고 14
- 정선군 공고 제2017-24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의견청취 공고 16
- 정선군 공고 제2017-28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8
- 정선군 공고 제2017-284호 정선군 도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19
- 정선군 공고 제2017-292호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2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4,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7 -3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낙동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3. 27
정 선 군 수

1. 사업명 : 아살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산73번지 일원(아살미길)
3. 사업량 : 계단식옹벽 L=245m, 영구앵커 128공, 소일네일링 127공
사면녹화 502㎡, 부대공 1식
4. 사 업 비 : 1,000백만원(설계비, 공사비 등)
5. 사업기간 : 2017년 4월 ~ 2018년 4월
6.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 행 자 : 정선군수
 - 나. 주 소 :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 설계도서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정선군 안전건설과(☎ 033-560-247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지 현황

□ 위치 도[남면 유평리 산73번지 일원(아살미길)]



□ 전경사진



정선군고시 제2017-42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3월 31일

정 선 군 수

- 가. 결정(변경)취지 : 대상지는 탄광지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정선군 고시 제2003-83호, 2003.10.18)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최초 지정 되었으며 강원랜드 내 세탁물을 처리하는 세탁공장으로 현재 기 운영 중에 있으나, 강원랜드의 내방객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부지의 효율적 관리 및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계획적·체계적인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위 치 :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390번지 일원
- 다. 사업시행자 :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함승희
- 라.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 마.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후	
합 계	57,122	-	57,122	강원랜드 지원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관리지역	57,122	-	57,122	

2. 용도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변경없음)
 - 1) 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 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증 감	변경후		
기정	⑭	강원랜드 지원단지	특정개발 진흥지구	사북읍 직전리 390번지 일원	-	57,705	-	57,705	정선고 제83호 (2003.10.18)	

3.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C2	10	집산 도로	156	직전리 613번지	직전리 389번지	일반도로	강원랜드 지원단지	-	-

2) 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 1-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신설 : B=10m, L=156m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랜드 지원단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군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함.

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⑭	강원랜드 지원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특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사북읍 직전리 390번지 일원	57,705	감)583	57,122	정선고 제83호 (2003.10.18)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⑭	정선군 사북읍 직전리 390번지 일원	57,705	감)583	57,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랜드 지원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소로1-C2호선)함에 따라 일부 구역이 중복되는 부분을 축소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가구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가 구 번 호	기정면적 (㎡)	가 구		증 감(㎡)	비고
			위 치	변경면적 (㎡)		
	계	-	-	57,122	증) 57,122	
A	공 업 용 지	-	사북읍 직전리 387번지	13,211	증) 13,211	
B	공공시설용지	-	사북읍 직전리 389번지	7,702	증) 7,702	
C	녹 지 용 지	-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36,209	증) 36,209	

2)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 면 표 시 번 호	가 구 번 호	기 정 면 적 (㎡)	가 구		증 감(㎡)	비 고	
			위 치	변 경 면 적 (㎡)			
	계	-	-	57,122	증) 57,122		
A	공 업 용 지	-	-	13,211	증) 13,211		
	A-1	세 탁 공 장	-	사북읍 직전리 387번지	13,211	증) 13,211	
B	공 공 시 설 용 지	-	-	7,702	증) 7,702		
	B-1	오·폐수처리장	-	사북읍 직전리 389번지	1,540	증) 1,540	
	B-2	배수지	-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1,261	증) 1,261	
	B-3	도로용지	-	사북읍 직전리 376-3번지	3,125	증) 3,125	
	B-4	도로용지(산책로)	-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1,484	증) 1,484	
	B-5	휴게쉼터	-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98	증) 98	
	B-6	휴게쉼터	-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90	증) 90	
	B-7	휴게쉼터	-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104	증) 104	
C	녹 지 용 지	-	-	36,209	증) 36,209		
	C-1	녹지용지	-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25,494	증) 25,494	
	C-2	녹지용지	-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5,835	증) 5,835	
	C-3	녹지용지	-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4,880	증) 4,880	

3)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신설	A-1 (세탁공장)	사북읍 직전리 386-2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제3조 5 [별표1] -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목(사무실 등) - 제17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제18호의 창고시설 -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마목부터 아목(온실 등)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도면참고	
			형 태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신설	B-1 (오·폐수 처리장)	사북읍 직전리 389번지 일원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제3조5 [별표1] -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도면참고	
			형 태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정선군 고시 제2017 - 47호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4월 5일

정 선 군 수

1. 정비사업 실시계획 : 명칭, 위치, 개요, 사업시행기간

명 칭	위 치	공사개요	사업시행 기간
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861번지 일원	피암터널 L=250m, 기대기옹벽 A=2,032㎡, 도로확장 L=170m, 기타 부대공 1식.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L=475m)	'17. 4. ~ '19.12.3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시행자 : 정선군수

나. 주 소 :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3.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와 소유자에 관한 명세(붙임 참조)

4. 위치도(세대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5. 준공된 급경사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정선군수
6. 실시설계도서 : 정선군 안전건설과 열람
7. 기타사항 :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안전건설과(재해예방계)
(☎ 033-560-2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7-243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17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정 선 군 수



2017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운영

1. 2017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의 설정

가. 기간 : 2017. 3. 20 ~ 4. 20(32일간)

나. 이유 : 연간 산불피해면적의 64%(발생건수의 35%) 및 대형산불이 3~4월에 집중 발생되고 있으며, 주로 소각산불(34%), 입산자실화(31%) 등이 산불의 원인이므로 군민에게 산불조심을 당부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 1) 정선군청(읍·면사무소), 정선국유림관리소
※ 정선군 산불방지대책본부 : 033-560-2423, 033-560-2157
- 2) 소방관서, 경찰관서, 군부대 등
-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다. 대표 신고전화번호 : 국번 없이 119

3. 당부사항

산불은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 합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논밭두렁·농업부산물·쓰레기 소각 등이 산불로 번져 주민 안전을 해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을 위한 깊은 관심과 참여 속에 산불로부터 산림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음사항을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첫째,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대책기간 중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에 가시기 전에 입산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포털(네이버, 다음) 지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계획입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 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 개개인의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7 - 245호

수용(사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강원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3차(16수용1387)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03. 21.

정 선 군 수



- 사 업 명 : 강원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권원확보)사업, 3차(16수용1387)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열람 기간 : 2017.03.21. ~ 2017.04.15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정선읍 봉양3길 21), ☎033-560-2434
- 의견제출기간 : 2017.03.21. ~ 2017.04.15(15일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강원도 정선군 남면 문곡리 산80-4외 15필지(지상권, 구분지상권 등)
 - “별첨”
-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 2017-246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의견청취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154kV 고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을 위한 전원 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 서류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3. 21.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154kV 고한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대표자 조환익)
3. 사업구역의 위치 : 강원지역(정선군 일원)
4. 토지명세서 : 붙임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7. 3. 21. ~ 2017. 4. 5.(15일간)
6. 열람서류 :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7.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정선군 정선읍 봉양2길 21) ☎(033)560-24354
8. 기타 보상관련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9-2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1.제 목		
2.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의 견		
4.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수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7-247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의견청취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154kV 영월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 서류를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를 하오니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7. 3. 21.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154kV 영월화력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2.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전남 나주시 전력로 55, 대표자 조환익)
3. 사업구역의 위치 : 강원지역(정선군 일원)
4. 토지명세서 : 붙임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7. 3. 21. ~ 2017. 4. 5.(15일간)
6. 열람서류 :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7.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정선군청 지역경제과(정선군 정선읍 봉양2길 21) ☎(033)560-24354
8. 기타 보상관련 문의는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033-259-25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견 서

1. 제 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정선군수 귀하</p>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정선군공고 제2017-28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주소, 성명, 전화번호 포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3월 30일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 309-1번지 일원
- 3.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안) 도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여량 생활체육시설	체육 시설	여량면 여량리 390-1번지 일원	-	증)8,288	8,288	금회	

- 4.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건축과, 여량면사무소
- 5.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이상(2017. 3. 30. ~ 2017. 4. 14.)
- 6.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건축과 및 여량면사무소에 서면 제출
-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 도시건축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7- 284호

- 정선군 도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고

정선군 도로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03월 30일

정 선 군 수

1. 계 획 개 요

- 사 업 명 : 정선군 도로기본계획
- 위 치 : 정선군 행정구역 전역(인접 시·군 접경지역)
- 계획 기간 : 기준년도 2015년, 목표연도 2025년
- 계획시행자 : 정선군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신문공고 다음날로부터 20일간
- 공람장소 : 정선군 안전건설과(033-560-2485)
- 공람내용 : 정선군 도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 04. 12(수) 14:00
- 장소 : 정선군청 대회의실

4. 주민의견 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개시 후 공람 만료일부터 7일이내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기재하여 정선군 안전건설과(033-560-2485)로 제출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안전건설과(033-560-2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7 - 292호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6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7. 3. 30.

정 선 군 수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2016년에는 자연재해가 2회 발생하여 5월 강풍으로 인해 사유시설 비닐하우스, 농작물, 축사 등 463 농가에 1,860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해 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7억7천5십만원이 소요되었고, 7월 호우 및 강풍에 의해 공공시설 4개소 154백만원과 사유시설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 25농가에 10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17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16년 한해동안 총 8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5억7천만원의 재산피해와 6명이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또한 7월 5일 정선군 남면 광덕리 광덕계곡에서 발생한 4명의 실종사건 수습에 있어, 신고 접수 후 즉각 긴급대책회의 개최하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및 긴급구조통제단을 구성·운영하여 소방서, 경찰, 군, 자원봉사단체 등 13개 협업기관이 연합으로 6개팀 687명의 수색팀을 구성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였고, 4개 기관 연락관으로 구성된 통합지원본부 운영으로 신속한 상황 보고와 언론보도 지원 및 수색지원에 적극 노력하는 등 실종자 수색을 조기에 완료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재난대응체계 모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실적으로,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3개과 109명으로 자연재난 및 전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특히 농업축산과에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전담하는 가축방역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정비를 실시하여 지난해(`15년) 보다 총 5명이 증가하였으며,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등 신설하여 지난해(`15년)보다 3개소 증가한 9종 10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 방재에 대한 의식함양과 재난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방재담당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을 대상으로 총46회에 걸쳐 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 안전모니터 봉사단의 재난안전관리 의식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각종 안전사고, 화재예방 등에 대한 홍보활동으로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 등 12회에 걸쳐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강화하고,

- 안전관리계획 및 정책의 총괄·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고 신속한 재난의 대응·복구를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하였으며, 재난·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감염병 등 주요 재난별로 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우리군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총215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시설물 123개소, 건축물이 92개소이며, 등급별로는 A등급 46, B등급 153개소, C등급 15개소, D등급 1개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재난방지시설 정비예산은 전년대비 5천9백만원이 증가한 총 275억8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정비사업, 하천재해예방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 기름유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오일웬스 등 4종의 환경 방재물자와 호우피해 등에 대비하여 마대 등 7종의 수방자재를 확보·보유하고 있습니다.
- 의료시설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22개소, 보건소 1개소에 271개의 병상과 51명의 의사 및 85명의 간호사가 있으며,
-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등 주민 30,300여명을 대피·수용할 수 있는 74개의 수용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구조장비로는 사다리차와 구조공작차 그리고 드론 1기를, 응급복구 장비는 굴삭기 등 256대, 산불진화장비 헬기 1대 임차배치 및 동력펌프 등 1,973점(대)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26백만원의 예산으로 신동읍 의용소방대 등에 수상인명 구조장비 등을 지원하여 인명구조능력을 향상하고자 하였습니다.
- 인력(기능)은 토목, 건축, 전기 등에 51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등 특수단체 및 자원봉사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해당연도 재난관리 기금최저적립액은 320백만원으로 100%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2016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1,066백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9천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은 5년 평균 442백만원을 사용하였으나 2016년에는 사용액이 없어 확보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 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 결과 8등급으로 지난해 진단결과와 동일하였습니다.
-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대상(102개) 시설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9개시설이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상황실은 각종 장비 등을 보호하고자 전력통신시설에 대한 면진테이블을 설치하여 지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군의 재난관리역량은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과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 노력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나, 그에 비교해 구조적인 재해 대응능력 부분은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더욱 보완하여 재난관리 체계구축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단위 : 건 / 천원)

일시	재난(피해)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16. 5. 2. ~ 5. 5.	강풍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463 / 1,860,481	-공공시설 : - -사유시설 : 463 / 770,500	
'16. 7. 1.. ~ 7. 7.	호우· 강풍	-공공시설 : 4 / 154,239 -사유시설 : 25 / 10,879	-공공시설 : 4 / 2,447,473 -사유시설 : 25 / 17,000	
'16. 1. 1. ~12. 31.	화재	-시설피해 : 84 / 570,000 -인명피해 : 부상 6명		
'16. 7. 4..	교통 수난사고	-시설피해 : 차량 1대 -인명피해 : 실종 4명	-수색결과 : 실종자 4명 발견 -유관기관협업으로 조기 수색종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 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 조직의 구성



※ 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감염병, 가축전염병 포함)

○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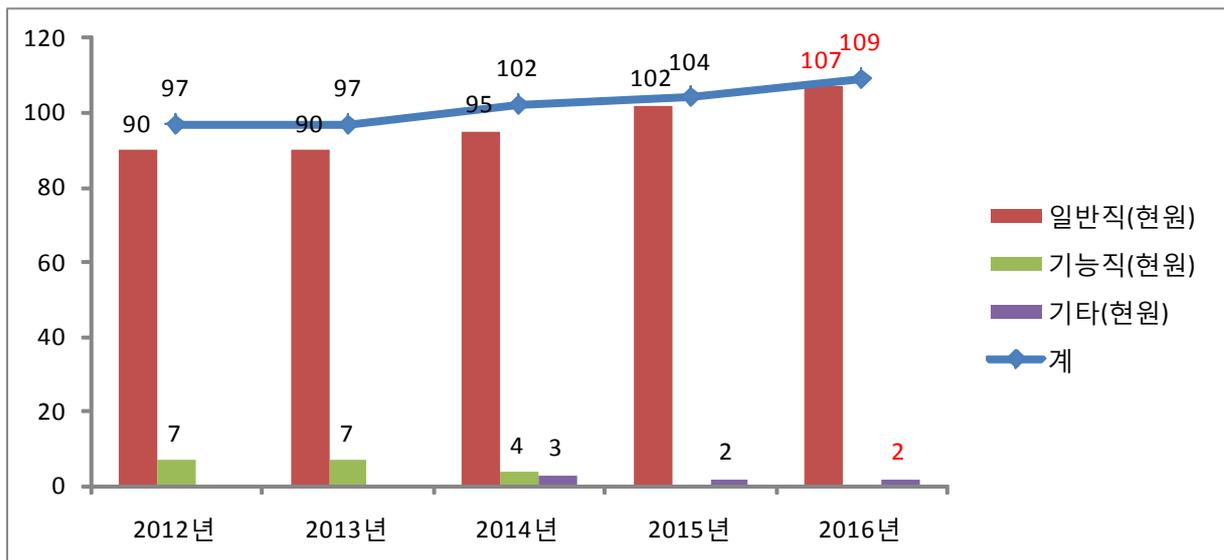
(단위 : 명)

과 별	계	일 반 직								기능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원	109	107		4	25	36	28	14		2
	현원	109	102		4	44	26	16	12		7
농 업 축산과	정원	24	22		1	8	7	3	3		2
	현원	26	21		1	8	7	3	2		5
안 전 건설과	정원	20	20		1	6	7	4	2		
	현원	21	19		1	6	5	4	3		2
보건소	정원	65	65		2	11	22	21	9		
	현원	62	62		2	30	14	9	7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97	97	102	104	109
일반직(현원)	90	90	95	102	107
기능직(현원)	7	7	4	-	-
기 타(현원)	-	-	3	2	2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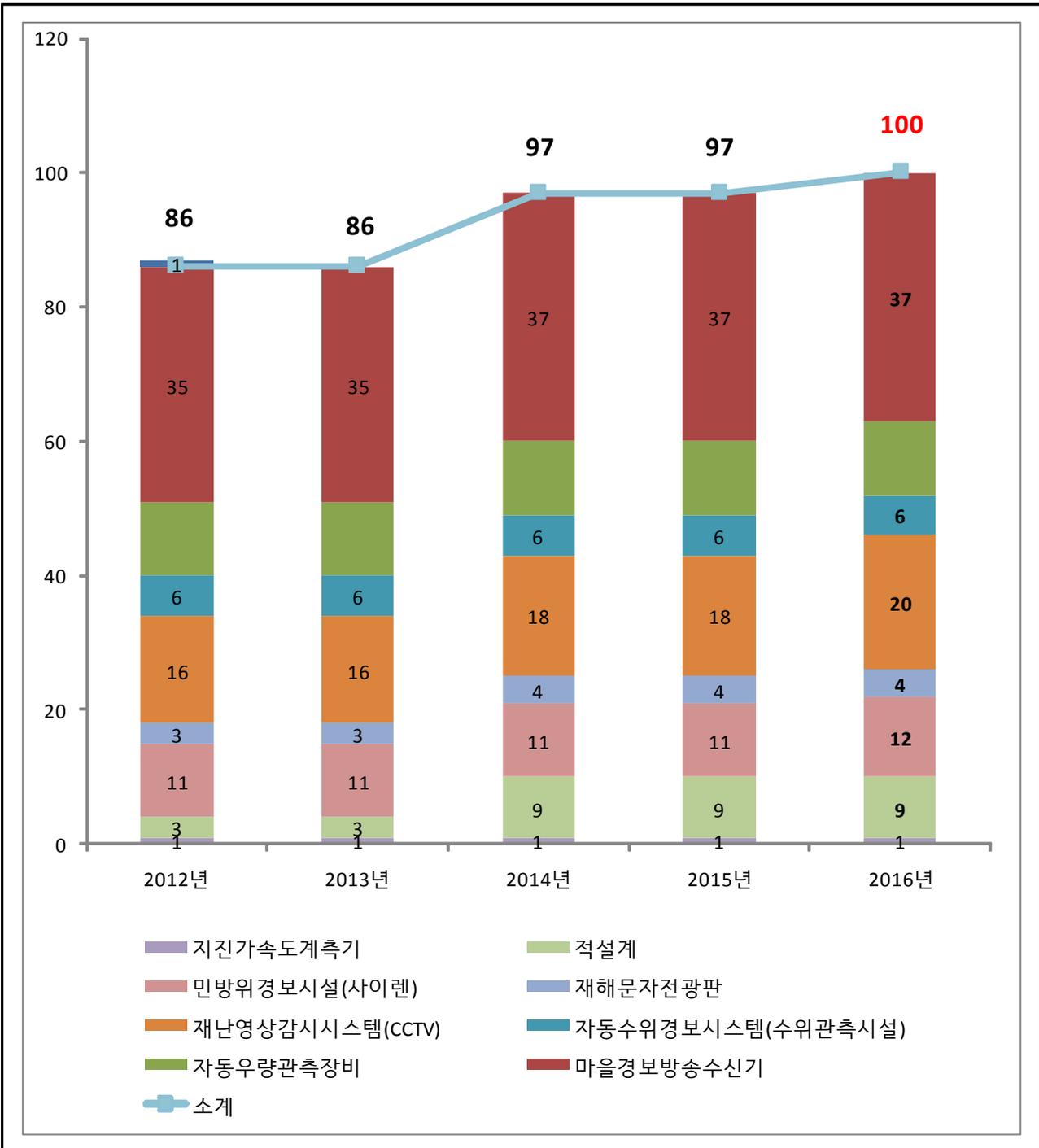
구 분	개소	설치장소
마을경보방송수신기	37	정선읍 가수리외 36개소
자동우량관측장비	11	정선군청외 10개소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6	정선2교외 5개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0	역전배수펌프장외 19개소
재해문자전광판	4	임계면사무소외 3개소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2	정선군청외 11개소
적설계	9	임계면 백복령외 8개소
지진가속도계측기	1	정선군청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86	86	97	97	100
마을경보방송수신기	35	35	37	37	37
자동우량관측장비	11	11	11	11	11
자동수위경보시스템(수위관측시설)	6	6	6	6	6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16	16	18	18	20
재해문자전광판	3	3	4	4	4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11	11	11	11	12
적설계	3	3	9	9	9
지진가속도계측기	1	1	1	1	1

※ 정선군 자체 설치 현황임.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증감원인

- 설치 후 유지관리를 통한 예경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노후 시설에 대한 보수·교체 및 재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기 설치된 장비의 유지보수 용역 등을 시행하여 관리하였고,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2개소를 신규로 추가 설치하였음.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교육·훈련

(단위 : 명)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2016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을 위한 워크숍	1.22	국민안전처	4	
제2기 현장관찰단 역량강화과정	2.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2016년 재난관리자원 업무 실무자 워크숍	2.23~24	국민안전처	1	
NDMS-재난관리과정	3.14~18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교육	3.15	국민안전처	1	
지자체 재난대응 역량강화 순회 토론회	3.16	국민안전처	1	
'16년 자연재난 복구지원 종합훈련 담당자 교육	3.21	강원도	1	
도-시군 안전정책협의회	3.24	강원도	1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사업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4.5	국민안전처	2	민간1
강원도 선진 재난안전관리 방안 워크숍	4.19	인제군 및 K-water 강원지역본부	1	
2015년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 구축사업 지자체 2권역별 사용자 교육	4.19	강원도	3	
2016년 재난관리자원 실무담당자 권역별 교육	4.28	국민안전처	1	
2016년 상반기 건설안전교육	5.12	원주지방국토관리청	13	
2016년 공직자 안보교육	5.16	정선군	135	
2016년 풍수해보험사업 업무담당자 교육	5.25	국민안전처	1	
재난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관련 시군 담당자 교육	5.26	강원도	1	
산불예방 및 수사감식실무	5.30~6.3	강원도 인재개발원	1	
지방자치단체 복구담당공무원 교육	5.31	국민안전처	2	
재난재해 담당공무원 직무 교육	6.1	정선군	46	
정선군 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6.7~6.10	정선군	300	
과 정 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참석인원	비고
중부권 부단체장 재난안전 전문교육	6.9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6기 긴급구조 및 재난안전 실무자반	6.14~15	강원도 소방학교	1	
안전분야 민관합동 워크숍	6.20	강원도	6	민간4
NDMS 및 급경사지 정보통합시스템 교육	6.20	국민안전처	2	
전기재해예방실무	6.20~23	전기안전기술교육원	1	
통합재난안전정보체계시스템 사용자 교육	7.11	강원도	3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사용자 순회교육	7.14	정선군	57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교육	8.11	국민안전처	1	
2016년 을지연습 근무자 교육	8.12	정선군	39	
선진예보시스템 활용 워크숍	9.1	강원지방기상청	1	
'16년 강원도 공무원 재난안전 아카데미 교육	9.1~2	강원도	1	
제3기 재난안전체험교육	9.5~7	강원도 인재개발원	2	
태풍호우상황판단게임과정(사이버)	9.16~10.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재난관리총론과정(사이버)	9.16~10.15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	
자연재해관리실무과정	9.26~30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제4기 재난안전체험교육	10.5~7	강원도 인재개발원	3	
제5기 재난안전체험교육	10.12~14	강원도 인재개발원	8	
지진업무담당자 교육	10.27	국민안전처	1	
제1기 국가안전관리계획과정	11.2~4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	
'17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지침 설명회	11.10	국민안전처	1	
핵심 재난예방 기술을 통한 도시방재 역량 강화 국제 컨퍼런스	11.17	국민안전처	1	
기후변화대책 업무연찬을 위한 지자체 워크숍	12.8~9	국민안전처	2	

○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6. 2. 28. ~ 2. 26.	가리산방재마을	10	2016년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교육	강원도	
'16. 7. 8.	정선군청	9	자율방재단장 풍수해 대비 교육	정선군	
'16. 10. 76. ~ 10. 28.	속초 학무정	9	강원도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 전진대회	강원도	
'16. 11. 17. ~ 11. 18.	화성 라비돌리조트	2	'2016년 지역자율 방재단 직무능력 강화교육	국민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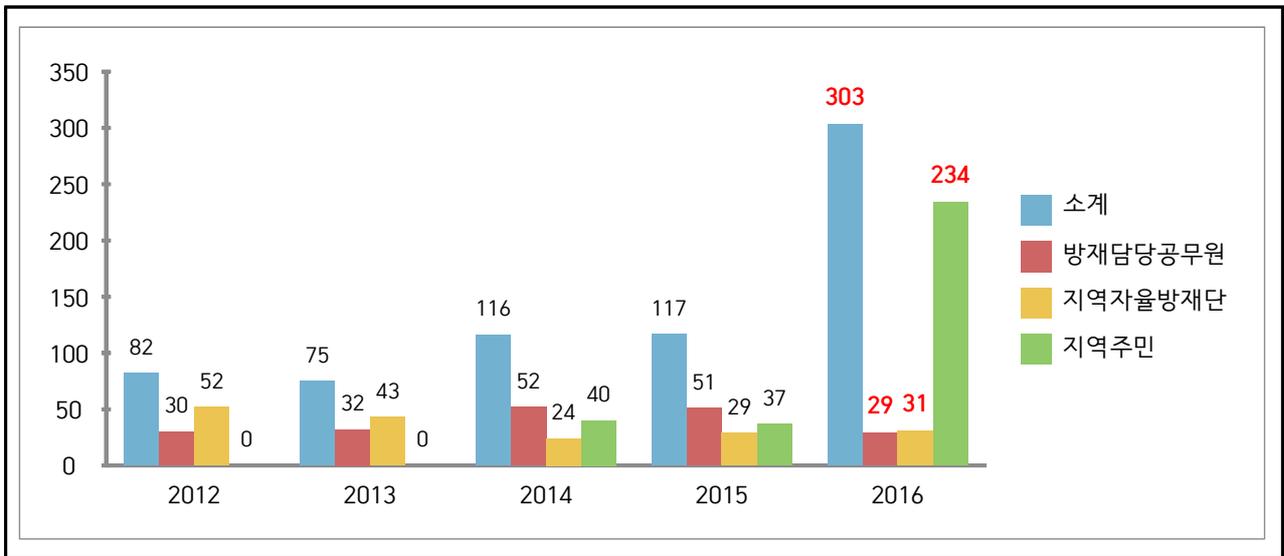
○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 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소소심 체험훈련	'16.5.17	정선 아리랑시장	40	소소심 체험훈련	정선군 정선소방서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16.7.15	정선소방서 녹송공원	75	물놀이 안전관리 교육	정선군 정선소방서	
수난구조대 스킨스쿠버 교육	'16.11.5 ~8	강원대 스포츠센터	18	수난구조대 스킨스쿠버 교육	정선군	
도민 안전체험교육	'16.11.15	태백 365 세이프타운	39	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체 험 등	강원도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사업단 참여자 안전교육	'16.12.6	정선종합 사회복지	62	민간위탁 자활근로자 사 업단 참여자 안전교육	정선군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82	75	116	117	303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교육	30	32	52	51	29
지역자율방재단 교육·훈련	52	43	24	29	31
지역주민 교육·훈련	-	-	40	37	234



☞ 교육·훈련 참석인원의 증감원인

- 기후변화 및 기상이변 등으로 국지성 폭우와 강력한 태풍 등의 재난에 대처함에 있어 군의 행정력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및 군민 들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총 교육 인원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였음.

(나) 안전모니터봉사단 재난안전관리 교육·훈련 / 봉사단원 제보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16. 6. 20.	원주	4	안전분야 민관합동 워크숍	강원도	
'16. 11. 15.	태백	39	도민 안전체험교육	강원도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	제보실적	처리실적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31	0	-	-	-	-

(다) 재난관리 관련 언론홍보

○ 현장홍보 실적(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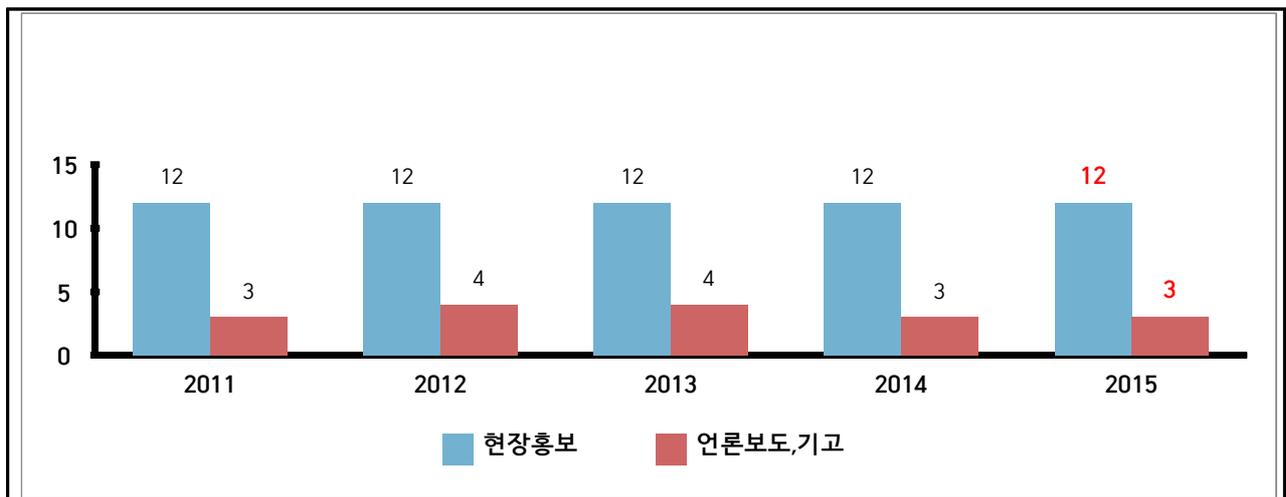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행사일시	장소	참석인원	비고
1	안전점검의 날 행사	내집앞 눈치우기,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법 산림연접 보일러 안전점검	1.20	조양강 제2교 사북읍 마을회관	48	
2	"	안전신문고 홍보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2.22	정선아리랑시장 정선관내 터미널	35 9	
3	"	봄철 산불예방 안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3.25	임계시장	41	
4	"	안전신문고 홍보 산 연접부 시설 안전점검	4.22	정선아리랑시장 정선관내52개소	2 2	
5	"	소소심 체험훈련 실시 및 홍보	5.17	정선아리랑시장	40	
6	"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6.17	정선아리랑시장	31	
7	"	물놀이 안전관리교육 긴급구조훈련	7.15 7.4	정선소방서 정선읍 녹송공원	75 470	
8	"	혹서기 폭염대비 사회복지시설 피해예방 홍보	8.1~31	정선관내 179개소 (경로당159,시설20)	1,800	
9	"	안전신문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9. 8	정선아리랑시장	41	
10	"	다중이용시설 지진대피 특성화 민방위 훈련	10.19	정선아리랑센터	251	
11	"	가을철 산불예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스킨스쿠버 교육	11.9	정선아리랑시장 강원대 스포츠센터	40 18	
12	"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안전교육 전통시장 시설물 안전점검	12.6	정선종합사회복지관 정선아리랑시장	62 15	

○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연번	기사제목	보도일시	언론사	비고
1	[정선]도로·터널 안전점검	`16.02.15	강원일보	
2	정선군, 해빙기 산림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	`16.03.16	국제뉴스	
3	정선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무회의	`16.05.10	포토뉴스	
4	정선 안전관리요원 20~40세, 27명 모집	`16.06.13	강원도민일보	
5	정선소방서, 수난사고 긴급구조종합훈련	`16.07.04	네시스	
6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수상안전요원 양성 안전사고 예방	`16.07.19	국제뉴스	
7	정선군, 물놀이사고 예방 등 하절기 안전대책 논의	`16.08.01	전국매일	
8	정선소방서, 을지연습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훈련 실시'	`16.08.23	강원신문	
9	정선드림스타트센터,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16.09.06	참뉴스	
10	정선군, 산불방지 예방·홍보 12월 15일까지 강화	`16.10.31	전국매일	
11	정선군-소방서 수난구조대 전문 잠수교육	`16.11.09	강원일보	
12	정선 시설물 안전관리 현장점검	`16.12.13	강원도민일보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현장홍보실적(횟수)	12	12	12	12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4	4	3	3	12



☞ 현장홍보 및 언론보도 증가원인

- 매달 안전점검의 날 행사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기여하였으며, 언론보도도 전년대비 크게 증가함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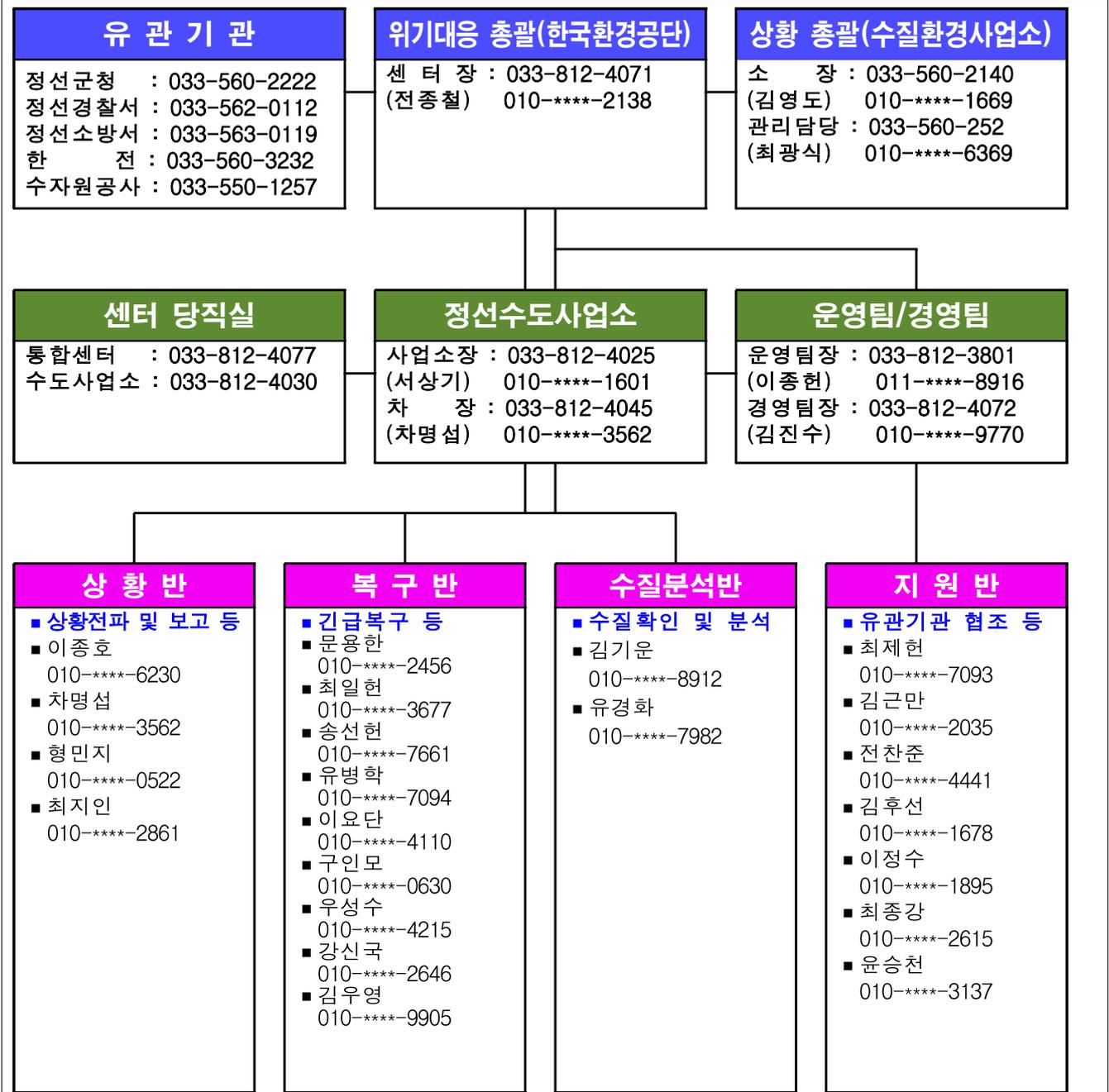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 ①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군수 • 위 원 원 :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 11조 제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부군수 • 위 원 원 : 1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사전검토 • 재난관련기관 협조사항 처리 • 안전대책위원회 효율적인 운영도모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법 제 7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민간 • 위 원 원 : 12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등급조정 •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점검 •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필요 요청사항
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	같은 법 제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본부장 : 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같은 법 제 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본부장 : 부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자원의 배분 및 조정
재난 예·경보 운영	같은 법 제 38조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 및 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재난 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 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 및 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 사고수습대책 추진상황의 확인 • 재난관련 언론보도사항 확인보고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 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 및 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국민안전처장관·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재난 신고	같은 법 제 1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실장 및 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긴급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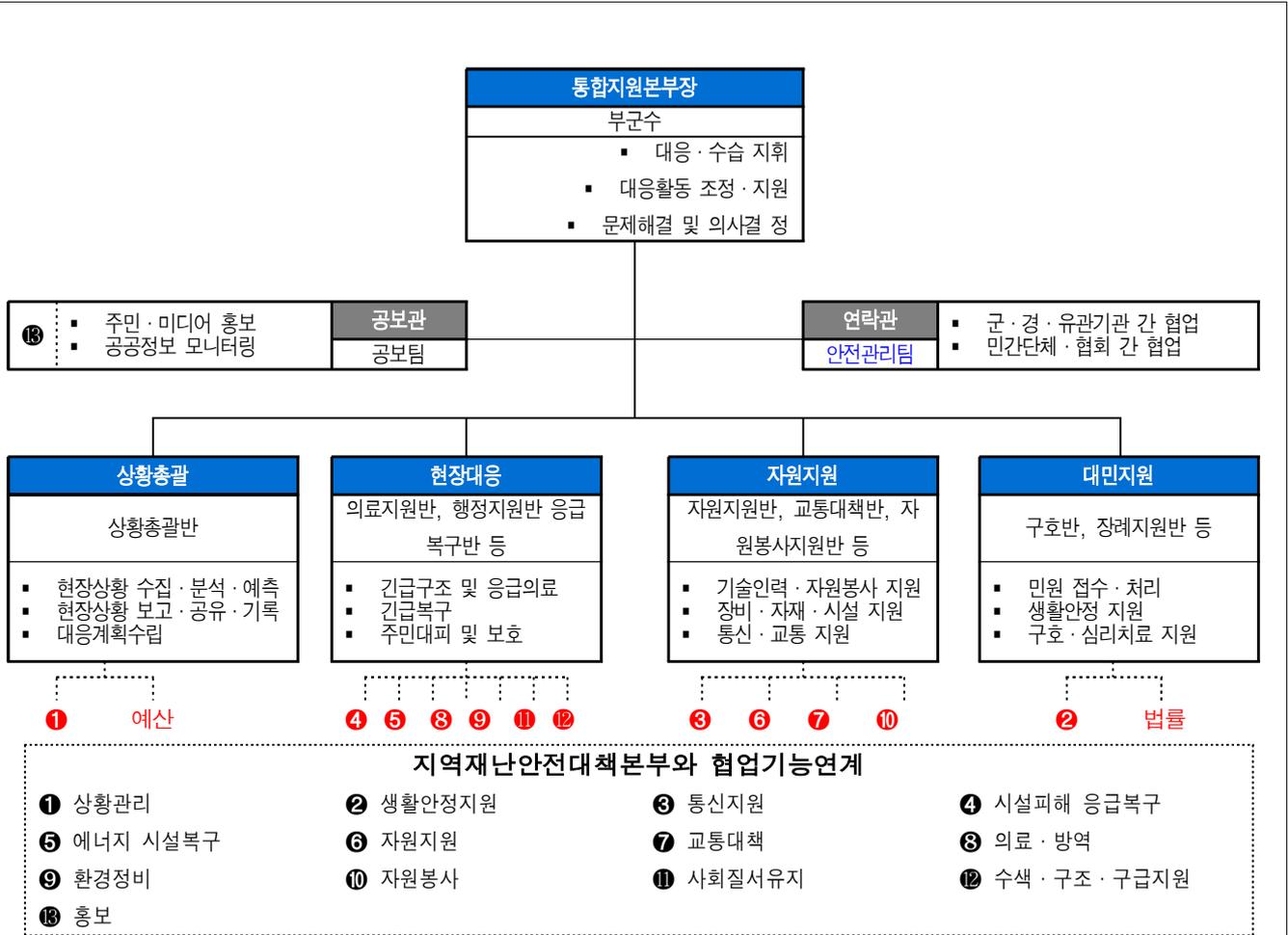
②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 식·용수 분야 위기대책반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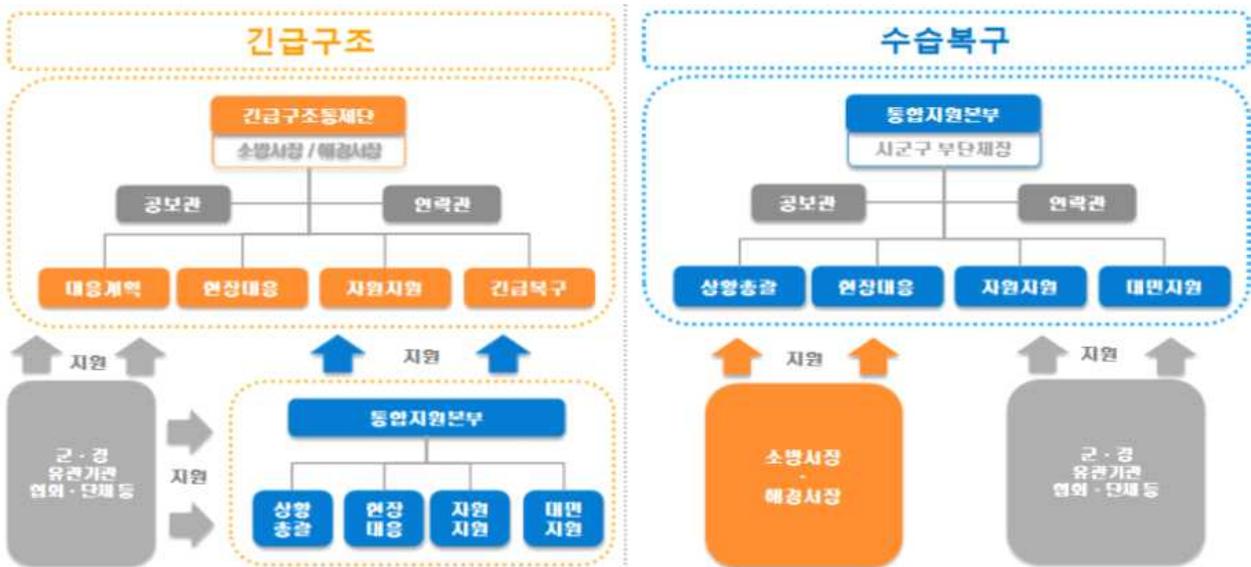


구 분	업체명	연 락 처		비 고
		회사 및 자택	휴 대 폰	
복구업체	수리건설	033-562-8380	010-****-3385	정선
	선광토건	033-591-7585	010-****-8570	고한,사북
	태정건설	033-563-7825	010-****-7871	신동
	청룡건설	033-563-5032	010-****-2052	화암
	수도건설	033-562-2734	010-****-5915	북평
	은산건설	033-591-1550	010-****-4050	남면
	백두건설	033-562-7609	010-****-7609	여량
	형제수도	033-563-7063	010-****-2771	임계

○ 정선군 감염병 방역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재난현장 지휘 및 협업체계>



○ 감염병 방역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주요임무

실 무 반		주 요 임 무	소관 부서장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본부 운영 총괄·조정 현장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부군수 (필요시 단체장)
상황총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예산 확보 및 집행 	안전건설과장
의료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심리지원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보건소장
장례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구호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임시주거시설 지원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대피소 근무자 배치 피해자 생계지원 등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한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동원 자원봉사자 현장 배치 등 지원 총괄 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등 장비 지원 지대본 자원지원반에 상황보고 	자치행정과장
언론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수습 상황 언론 브리핑 언론사 현장취재 지원, 오보대응 등 지대본 홍보반에 상황보고 	기획감사실장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유관기관 파견자
유형별대이반	산불진화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환경산림과장
	건물 안전진단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도시건축과장
	제설지원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리조트 붕괴 사고)	안전건설과장
	오염처리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	환경산림과장
	농·축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농업축산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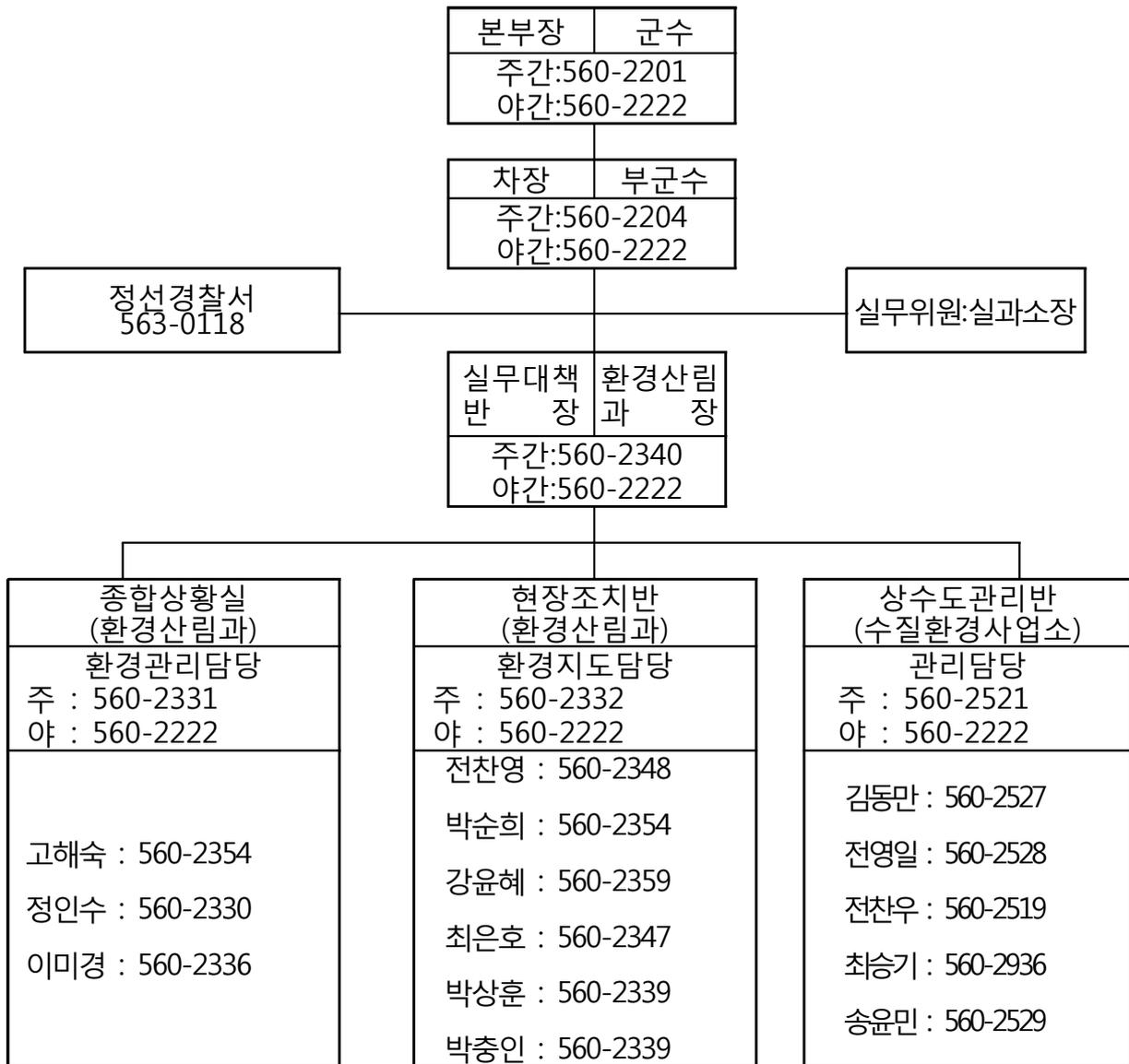
○ 정선군 감염병 방역대책반



○ 정선군 방역대책반 팀별 주요역할

구 성		주요 임무	관련부서
지휘부	반장	· 시·군·구 보건소장이 되며, 방역대책반의 업무 총괄	
	담당관	· 감염병 담당 과장급이 되며, 반장 보좌 및 실무반 업무 총괄	
실무반	감시 및 대응팀	· 환자신고접수 · 환자 상담 및 정보제공 · 주민 홍보 · 의료기관 홍보 · 환자발생보고 · 자가격리자 관리 및 지원	주관 : 예방의약 지원 : 보건행정
	역학조사팀	· 환자사례조사 및 조치 · 환자, 검체후송 · 퇴원환자관리 · 환가소독 · 접촉자추적관리	주관 : 위생 지원 : 방문보건
	실험진단팀	· 검사 및 진단 · 실험실 감시체계 운영 · 기타검사업무 전반	주관 : 진료
	예방접종팀 (필요시 설치)	· 지역별 예방접종 · 예방접종기록관리 · 접종관련 홍보 및 교육 · 수급관리 · 이상반응 신고·보고	주관 : 예방의약 지원 : 건강관리

○ 수질오염사고 대책반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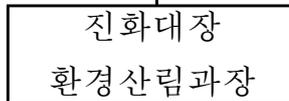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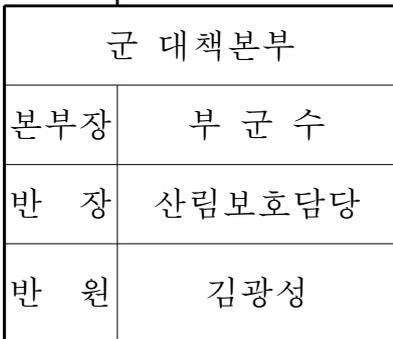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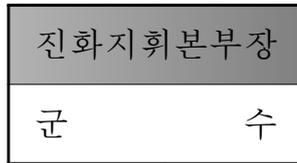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화암면	남 면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560-2601	560-2611	560-2621	560-2631	560-2641	560-2651	560-2661	560-2671	560-2681

덕 정 수 장	송 정 수 장	고한(사북) 정 수 장	납돌(조동) 정 수 장	증 산 정 수 장	화암(회동) 정 수 장	여량(북평) 정 수 장	임 계 정 수 장
812-4039	812-4036	812-4040	812-4044	812-4033 812-4042	812-4043 812-4045	812-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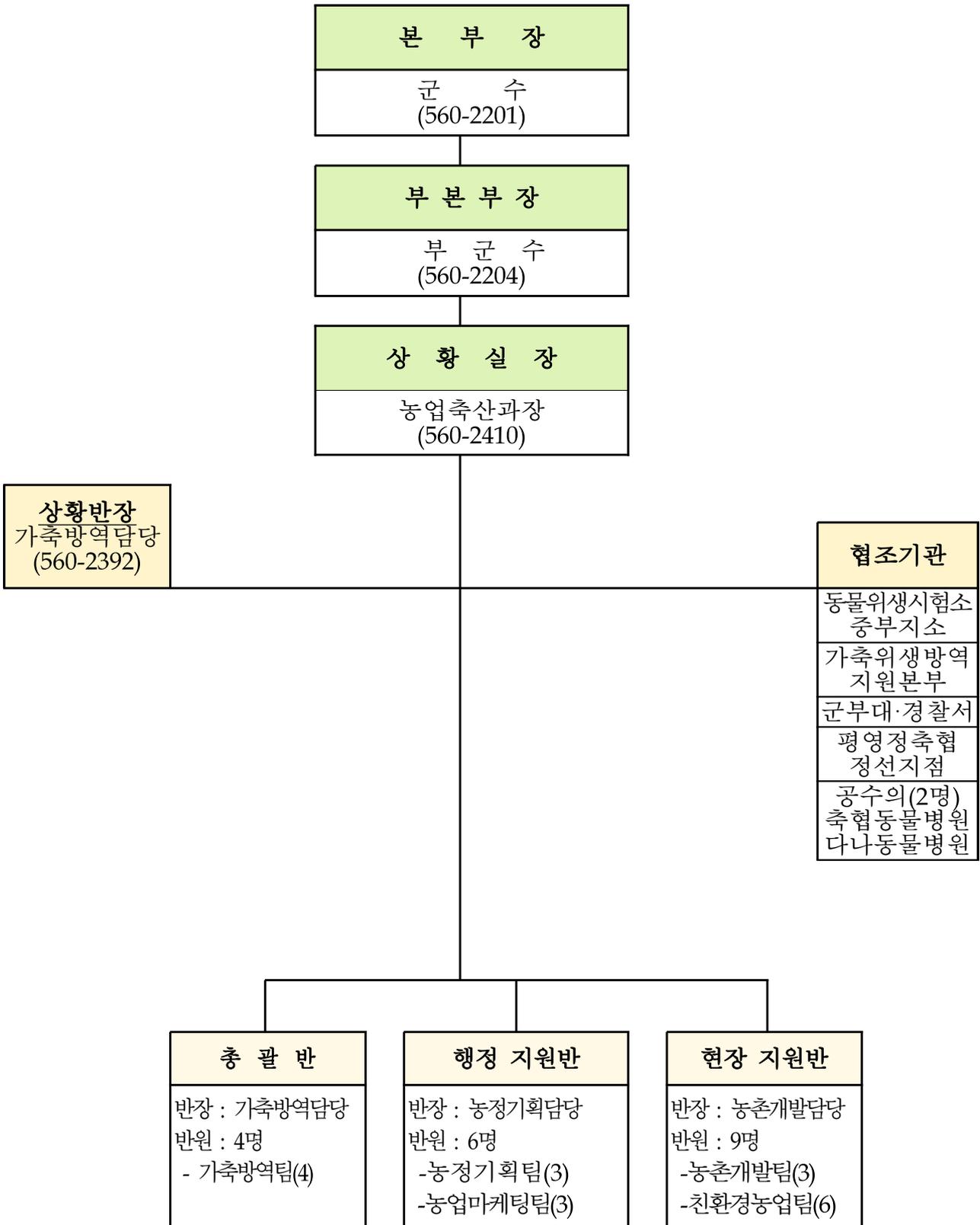
◇ 한국환경공단 정선수도사업소(정수장 총괄관리)
(정종완 차장 사무실 812-4034, 야간 010-****-0962)

○ 정선군 산불 초동진화대 체계도



진화 1반(6명)			진화 2반(6명)		
반장	산림보호담당		반장	산림조성담당	
조별	성 명	휴대폰	조별	성 명	휴대폰
1조	신장근	010-****-1945	2조	이광은	010-****-1430
	어승호	010-****-1430		전성재	010-****-4869
	라태운	010-****-2573		이경진	010-****-5109
	최승래	010-****-8232		김동주	010-****-7809
	함형규	010-****-7113		유상배	010-****-0600
	박현빈	010-****-6383		현준희	010-****-5035

○ 정선군 가축방역 대책본부 구성도



③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민방위재난종합상황실 운영규정	- 발생재난의 상황파악 유지 및 보고 -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전파 및 초동대처 지도	1997.09.26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 업무의 협의·조정	2005.03.22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005.03.22	
재난예·경보 운영규정	- 정확한 재난 예·경보 상황의 확인 - 예·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예·경보 실시	2006.02.13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조례	-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등에 관한 사항	2006.03.31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 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제한으로 인명피해 예방	2007.4.17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 여름철 물놀이 행락객 인명피해 예방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2.05.30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조례	- 자연재해 사전대비·대응 및 복구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 및 평가 - 시설물별 피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	2013.06.05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시 재해영향사전검토 및 저감대책 마련	2013.07.31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설치 및 운영조례	-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 - 재난관련기관 간의 공조체계 구축	2013.12.11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당없음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6)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의 지정·관리 및 정비

(가)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관리

○ 유형별

(단위 : 개소)

총계	시설물						건축물								
	소계	교량	스키장	삭도궤도	유원시설	대형목사장	소계	공청공사	아파트	연립주택	판매시설	형박숙사	대목욕탕	형유목욕탕	유원시설
		래프팅시설	-	-	-	-		중여시	합객시설	공연시설	관전시	람시	의료시설	대건물	형건축사
215	123	94	1	12	2	-	92	12	49	21	3	-	-	-	1
		14	-	-	-	-		2	1	-	2	-	-	-	1

○ 등급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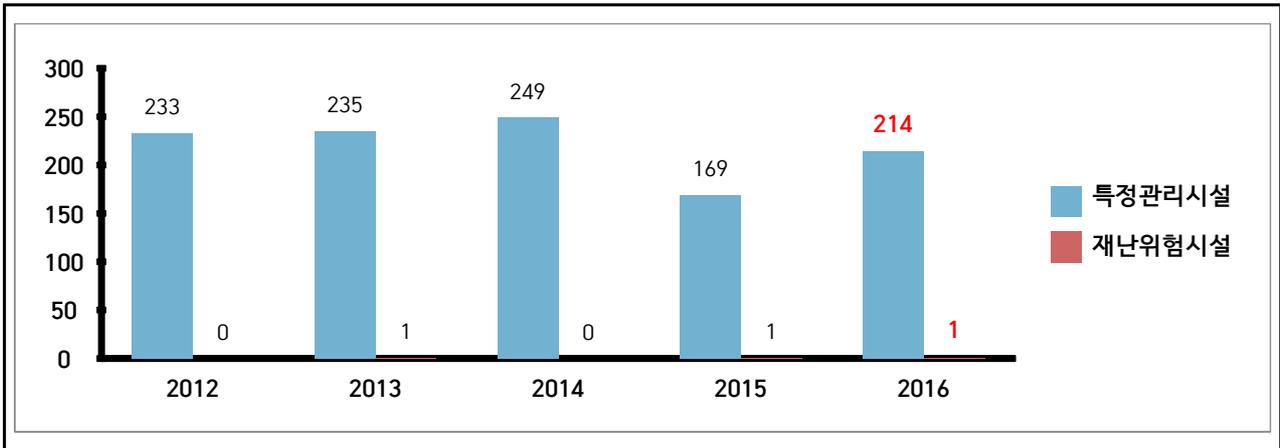
(단위 : 개소)

구분	계	중점관리시설				재난위험시설			비고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계	215	214	46	153	15	1	1	-	
시설물	123	122	40	74	8	1	1	-	
건축물	92	92	6	79	7	-	-	-	

○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특정관리대상시설등	233	235	249	169	214
재난위험시설	-	1	-	1	1



☞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재난위험시설 증감원인

- 교량,삭도·케도, 래프팅 보트 등 시설 증가에 따라 시설수 증가함.

(나)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정비

○ 안전점검 실시

구 분	기 간	대상수량	점검건수	지적건수	점검자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반기	16.01.01 ~ 16.06.30	170	170	-	관리주체 해당부서	-
하반기	16.07.01 ~ 16.12.30	215	215	-	관리주체 해당부서	-

○ 정비실적(해당없음)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해소일자	사업비 (백만원)	정비내용
-	-	해	당	없	음	-	

☞ 안전점검결과 지적사항 미조치 사유 : 해당없음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가) 재난방지시설 정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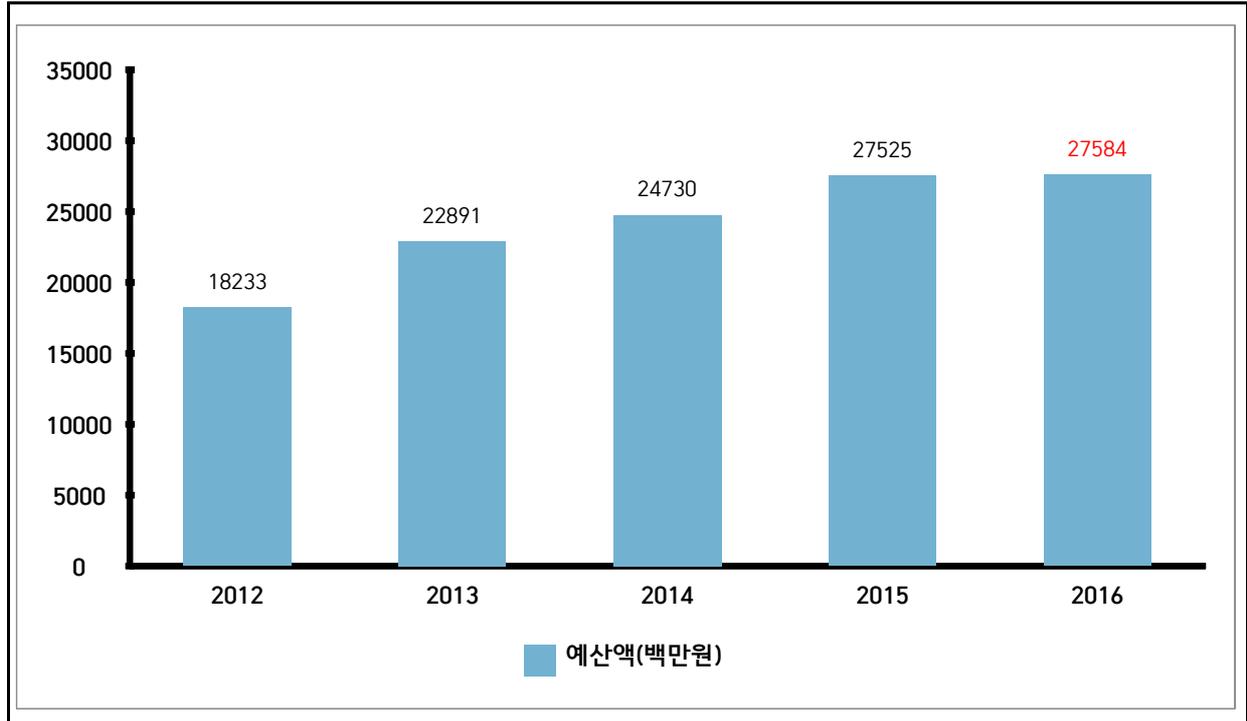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정비목적
급경사지 정비사업	정선읍, 남면	낙동2, 세대2 급경사지 정비	2016년	8,522	급경사지 재해예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고한읍	고한11리사면보강 고한19리 침수위험지정비	2016년	1,310	재해위험지 재해예방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지장천	하천정비 L=0.8km,	2016년	3,373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남면, 사북읍, 정선읍	호안정비 L=1.22km, 설계보상 2개소	2016년	1,204	소하천재해예방
기성제 정비	정선읍 외 8개읍면	호안정비 L=72.22km	2016년	150	하천재해예방
군도 확포장 정비	정선읍 외 8개읍면	군도 정비	2016년	1,053	도로정비
농촌생활 용수개발	정선읍 외1개면	생활용수개발	2016년	227	생활용수공급
농경지 배수로정비	정선읍 외8개 읍면	배수로정비	2016년	1,56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수리시설정비	정선읍 외8개 읍면	수리시설정비	2016년	60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정선읍 외5개 읍면	배수로, 농로	2016년	300	영농환경개선 및 재난방지
사방댐 설치공사	화암면 외 3개 읍면	9개소	2016년	1,907	산림재해예방
지장천 하수처리시설 증설	남면 무릉리	처리용량 증설 3,500톤/일	2016년	3,957	안정적 하수 처리
정선읍 하수처리시설 증설	정선읍 북실리	처리용량 증설 800톤/일	2016년	1,537	안정적 하수 처리
천포, 유문동 하수관거 정비	신동읍 천포, 유문동 일원	관거정비 6.01km	2016년	848	하수관거 정비
회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선읍 회동리 일원	관거정비 3.05km	2016년	1,036	하수관거 정비

○ 재난방지시설 연도별 예산확보 현황(2012 ~ 2016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	18,233	22,891	24,730	27,525	27,584



☞ 재난경감시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입 감소로 재정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재난방지시설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재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 확보액은 59백만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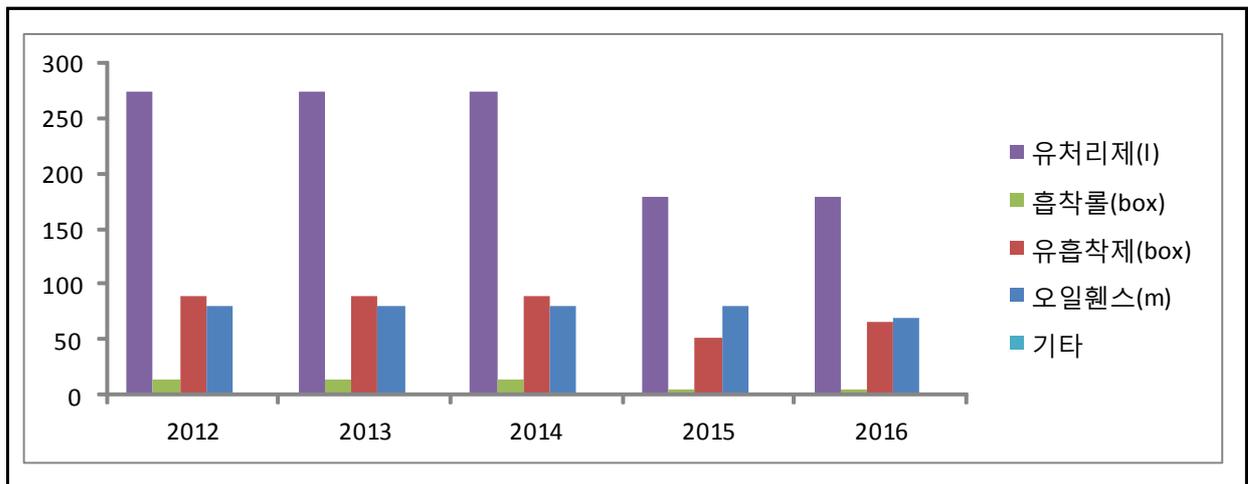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 방재물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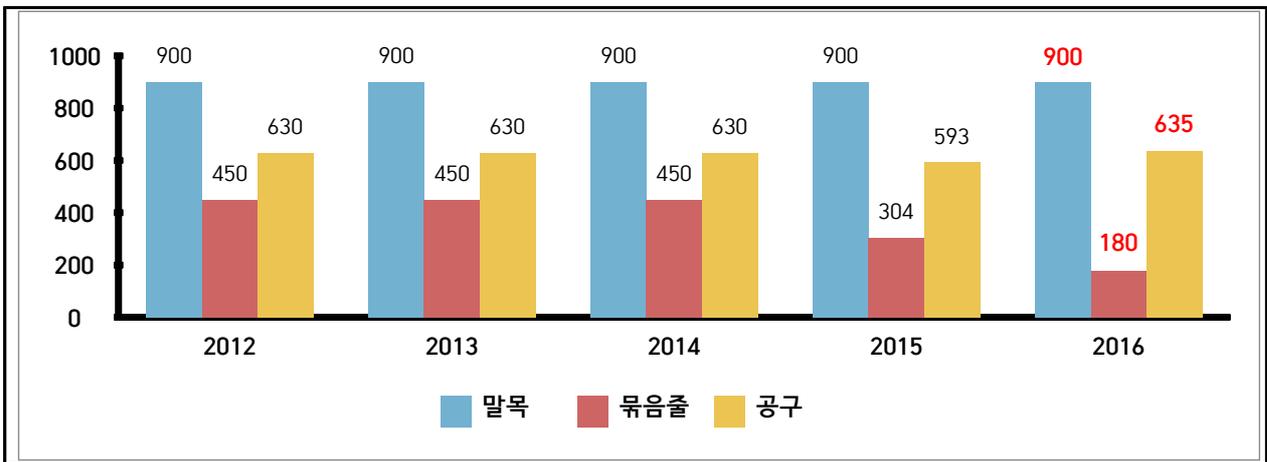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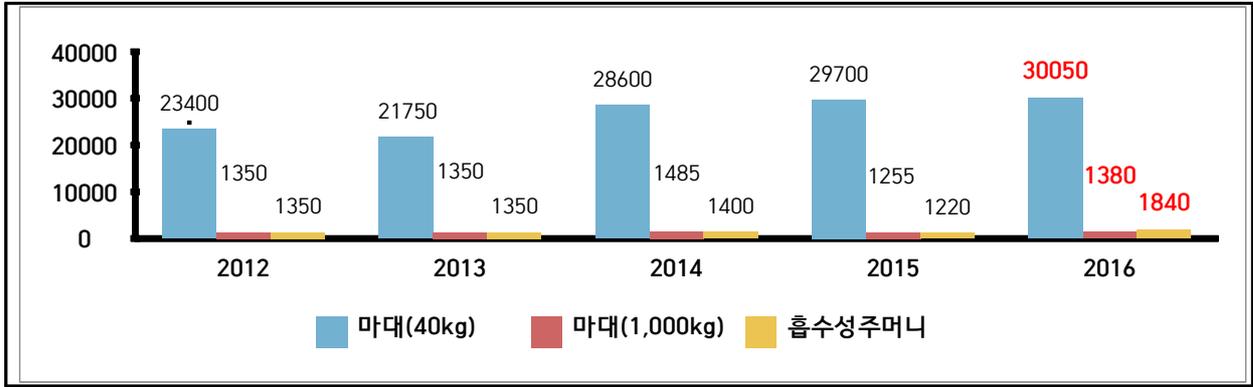
계	오일웬스 (m)	유흡착제 (BOX)	흡착롤 (BOX)	유처리제 (ℓ)	기타
총계	60	66	5	180	

방재물자 종류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458	458	458	317	321
오일웬스(m)	80	80	80	80	70
유흡착제(BOX)	90	90	90	52	66
흡착롤(BOX)	14	14	14	5	5
유처리제(l)	274	274	274	180	180
기 타	-	-	-	-	



○ 수방자재 연도별 현황

수방자재 종류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마대(40kg)	23,400	21,750	28,600	29,700	30,050
마대(1,000kg)	1,350	1,350	1,485	1,255	1,380
비닐(PE필름)	450	450	450	450	168
흡수성주머니	1,350	1,350	1,400	1,220	1,840
말뚝	900	900	900	900	900
묶음줄	450	450	450	304	180
작업공구	630	630	630	593	635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 방재물자의 수량은 사용 및 보충 구매에 따른 증감이 있고 수방자재의 경우 매년 각 읍·면별 부족분에 대하여 파악하여 목표 비축량에 맞추어 구입·보유하고 있으며, 상기 외 필요한 물품은 예산범위에서 별도 구입·보유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증감원인은 없음.

○ 의료시설 현황

구분	개소	의사(명)	간호사(명)	구급차(대)	병상수(개)	영안실(실)
합 계	41	51	85	4	271	2
병 원	22	34	53	2	271	2
보건소	1	4	14	2		
기타(지소및 진료소)	18	1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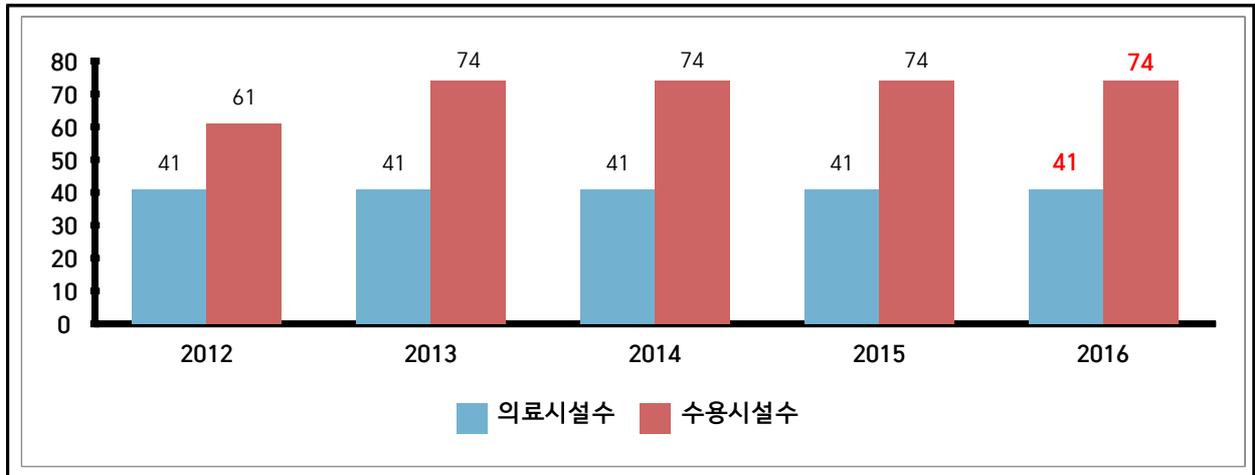
○ 수용시설 현황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수용시설	74	30,300	26	29,200	26	268	11	151	2	352	9	329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의료시설수		41	41	41	41	41
수용시설	개소	61	74	74	74	74
	수용인원	7,639	8,220	8,220	30,300	30,300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가 원인

- 전년도와 비교하여 시설의 증감이 없음.

(나) 장비 지정 현황

○ 구조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헬기	비고
4	2	1			드론1

○ 복구장비

(단위 : 대)

구분	계	덤프 (15톤)	굴삭기 (6중)	그레이더	로우더	소형포	추레라	기타
총계	256	43	75	2	5	2	2	127 배토기4 모래살포기5 전기톱6 수중펌프8 엔진펌프104

○ 산불진화장비 현황

(단위 : 대)

계	헬기보유	헬기임차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기 타
1,996	-	1	12	10	1,973

○ 기타장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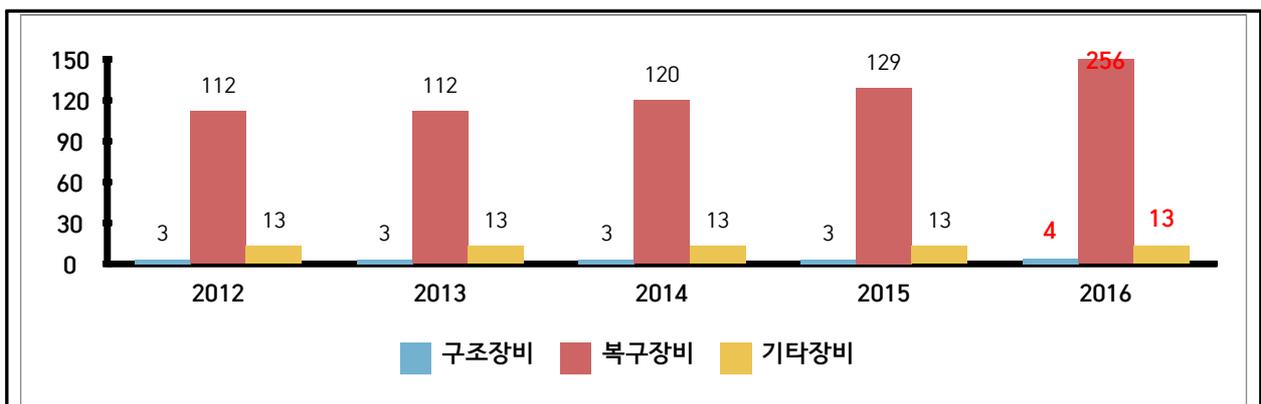
(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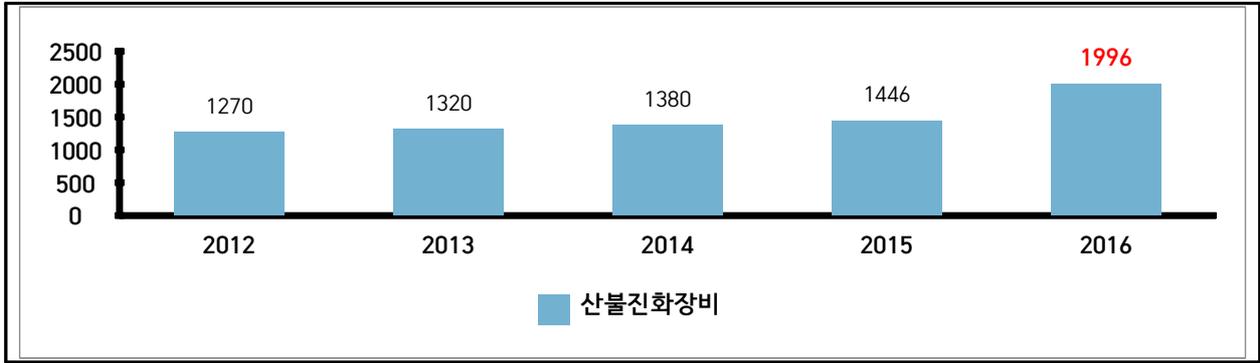
계	용접기	컴프레샤	양수기	발전기	천공기	착암기	기타	비 고
13	1	1	8	2		1	0	

○ 연도별 현황

(단위 : 대)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구조장비	3	3	3	3	4
복구장비	112	112	120	129	256
산불진화장비	1,270	1,320	1,380	1,446	1,996
기타장비	13	13	13	13	13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지정장비는 2016년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 발령으로 복구장비 목록이 명확해짐에 따라 기타 복구장비 증가가있고, 개인진화장비 구매에 따른 증가가 있음.
- 소방지원활동 증가에 따라 드론 1대를 119구조대 배치하고 고가사다리차를 사북119안전센터에 추가배치함.

(다) 인력 지정 현황

○ 기술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토목	건축	전기	농업	전산	보건	기타
인원	9	7	2					

○ 기능인력

(단위 : 명)

구분	계	전기공	통신공	중기운전	기타
인원	42	9	1	32	

○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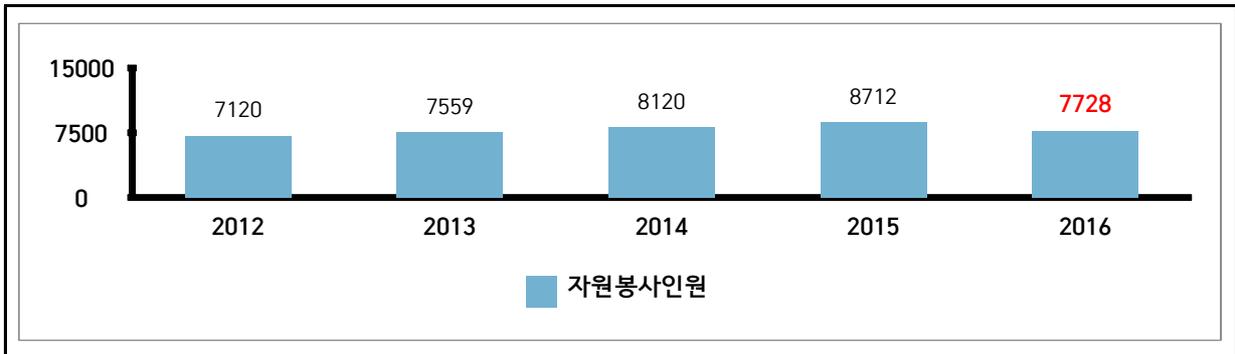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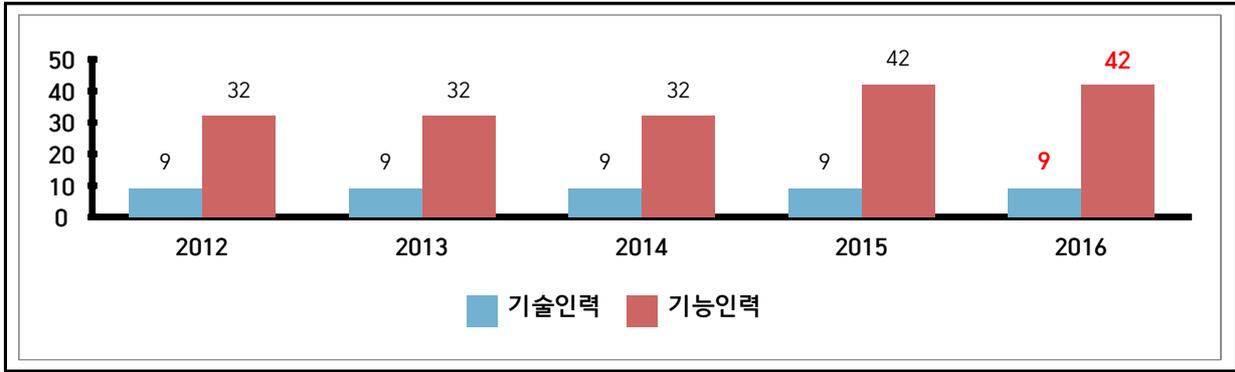
(단위 : 명)

계	적십자봉사대	새마을부녀회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7,728	290	287	19	50	14	7,068

○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자원봉사단체	7,120	7,559	8,120	8,712	7,728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 자원봉사 단체수는 증가하였으나 자원봉사 인원은 다소 감소하였음.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하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평가	'17.1월~3월	강원도, 국민안전처	우수	

※ 점검·평가 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기관 등으로 기재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시설물별	내진설계 대상(①) (동수, 시설물 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보강 실적(②) (전년도 까지)	`14년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②+③)/①×100
			동수(시설수) (③)	투자사업비 (백만원)	
공공시설	102	9	-	-	8.8%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내진율	8.8%	8.8%	8.8%	8.8%	8.8%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이유

- 지진발생 영향 미미 및 의식부족과 열악한 지방재정 등 어려움이 있음.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부	여	여	
종합상황실	부	여	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내진대책이 저조한 사유

- 군청 청사 신축 추진 계획 중..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해당없음)

지구별	긴급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보 시스템 (개소)
		계	안내표지판	대피장소 표지판	
		해당없음.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현황(실적없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 (천원)			해	당	없	음
지구수(개소)						
긴급대피장소(개소)						
표 지 판	안내표지판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대피로 표지판					
경보시설(개소)						

☞ 정비사업비,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등 증감원인

- 해당없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최저적립기준액(①)	적립액(②)	확보율 (②/①×100)
320백만원	320백만원	100%

※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기준

-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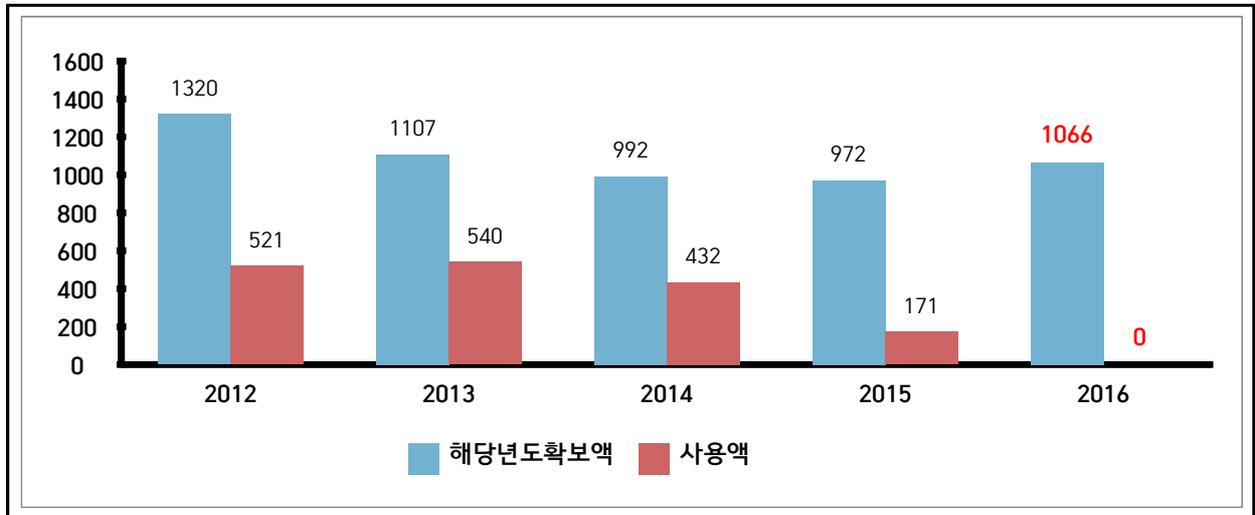
※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자연재난) 또는 나목(인적재난)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 ✓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로 한정한다) 및 보수·보강
 - ✓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 ✓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 ✓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확 보 액		1,320	1,107	992	972	1,066
사 용 액	계	521	540	432	171	-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	-	-	-	-
	재해저감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349	350	164	71	-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133	149	218	100	-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	41	50	-	-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	-	-	-	-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39	-	-	-	-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	-	-	-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복구	-	-	-	-	-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가 원인

- 2016년 재난관리 기금 최저적립액은 320백만원이고 이에 320백만원을 적립하여 100%의 확보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2016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전체)은 1,066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는 9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는 2016년도의 사용액 감소함에 따라 확보액 증가한 것임.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현황

○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현황

행동 매뉴얼명	소관부서	작성년도	매뉴얼 주요내용
풍수해	안전건설과	2006.12.27	풍수해재난 행동요령
지진	안전건설과	2006.12.27	지진재난 행동요령
대형화산폭발	안전건설과	2014.3.	화산폭발 행동요령
가뭄	안전건설과	2015.11.12	가뭄재난분야 행동요령
산불	환경산림과	2006.12.27	산불재난 행동요령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산림과	2014.4.	화학유해물질 유출사고 행동요령
대규모수질오염	환경산림과	2014.4.	대규모 환경(수질)오염 행동요령
댐붕괴	안전건설과	2014.9.	댐붕괴 행동요령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안전건설과	2014.4.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행동요령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지역경제과	2016.10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행동요령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도시건축과	2016.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행동요령
가축질병	농업축산과	2006.12.27	가축질병 행동요령
감염병	보건소	2006.12.27	감염병분야 행동요령
정보통신	자치행정과	2006.12.27	육상화물 운송분야 행동요령
전력	지역경제과	2016.10	전력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보건의료	보건소	2006.12.27	응급의료분야 행동요령
식용수	수질환경사업소	2007.8.29	식용수분야 행동요령
육상화물운송	도시건축과	2006.12.27	육상화물 운송분야 행동요령
가스	지역경제과	2016.10	가스시설물 피해 행동요령

○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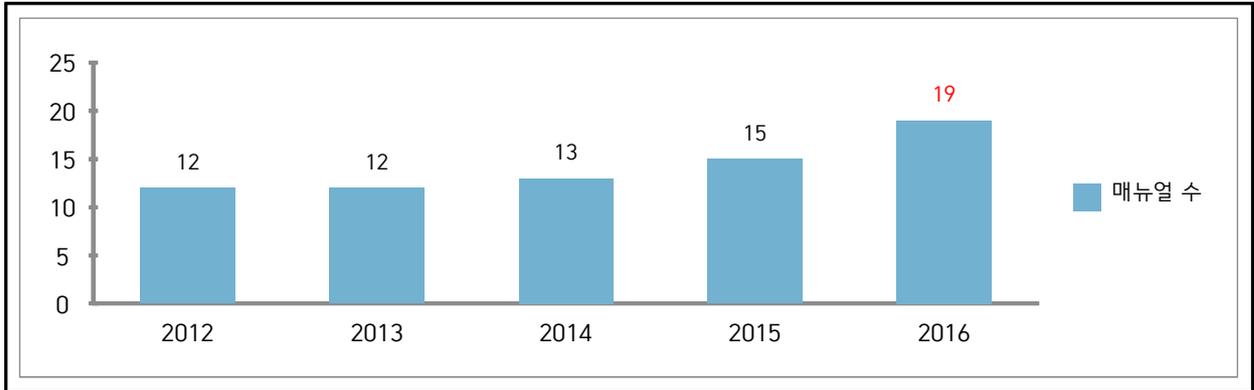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풍수해, 지진, 대형화산폭발 가뭄 댐붕괴	2016.10.12	행동매뉴얼 표준프레임 적용에 따른 개정	

○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016.5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매뉴얼 현행화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매뉴얼 수	12	12	13	15	19



- ☞ 행동매뉴얼 수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 설명
 -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요령 매뉴얼 다양화와 현행화 추진.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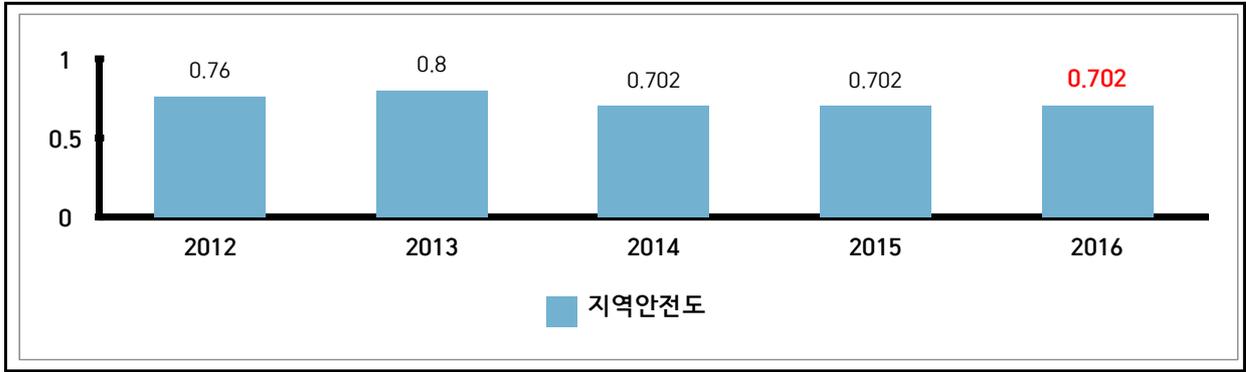
○ 진단분야별 점수

구 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	지역안전도	등 급
진단결과	0.458	0.553	0.830	0.702	8

※ (안전) 1등급 <-----> 10등급 (위험)

○ 연도별 진단결과

구 분	평가항목			지역 안전도	등급	비고
	위험환경	위험 관리능력	방재성능			
2012년	0.626	0.906	0.300	0.760	9	
2013년	0.564	0.906	0.300	0.800	10	
2014년	0.542	0.577	0.829	0.702	8	
2015년	0.474	0.580	0.830	0.702	8	
2016년	0.458	0.553	0.830	0.702	8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2016년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는 0.702(8등급)로 전년과 동일함.
- 분야별로는 (위험환경)과 (위험관리능력)은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및 피해의 감소로 2015년 보다 좀 더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방재성능)은 2015년과 동일한 것으로 진단됨.

바.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풍수해보험 가입

(가) 개 요

-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대설 등)에 대해 재난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임.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 공동, 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보험상품은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80%, 90%를 각각 보상하는 3종으로 구성
- 보험료 :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
 - 계층별 지원율 : 일반 55%,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보험기간 : 1년 소멸성

(나) 보험료 산출내역

- 건축물 ⇨ 일반, 소유자, 가입비율(90% 경우) 기준

(단위 : 원)

구 분	21평 (70㎡)	24평 (80㎡)	27평 (90㎡)	30평 (100㎡)
보험가입금액	63,000,000	72,000,000	81,000,000	90,000,000
계	66,400	75,800	85,300	94,800
국고 지원금	32,000	36,500	41,100	45,600
지자체지원금	5,900	6,800	7,600	8,500
주민 부담금	28,500	32,500	36,600	40,700

- 건축물 ⇨ 일반, 소유자, 가입비율(80% 경우) 기준

(단위 : 원)

구 분	21평 (70㎡)	24평 (80㎡)	27평 (90㎡)	30평 (100㎡)
보험가입금액	56,000,000	64,000,000	72,000,000	80,000,000
계	59,000	67,400	75,800	84,300
국고 지원금	31,100	35,500	39,900	44,400
지자체지원금	6,600	7,500	8,500	9,400
주민 부담금	21,300	24,400	27,400	30,500

○ 건축물 ▷ 일반, 소유자, 가입비율(70% 경우) 기준

(단위 : 원)

구 분	21평 (70㎡)	24평 (80㎡)	27평 (90㎡)	30평 (100㎡)
보험가입금액	49,000,000	56,000,000	63,000,000	70,000,000
계	51,600	59,000	66,400	73,700
국고 지원금	27,100	31,100	35,000	38,800
지자체지원금	5,800	6,600	7,400	8,200
주민 부담금	18,700	21,300	24,000	26,700

○ 비닐하우스 ▷ 내재해형 07-단동-3, 가입비율(90% 경우)

(단위 : 원)

구 분	100평 (330㎡)		300평 (990㎡)	
보험가입금액	5,910,300	5,910,300	17,730,900	17,730,900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계	306,300	255,200	918,900	765,700
국고 지원금	142,800	119,000	428,300	356,900
지자체지원금	25,700	21,400	77,100	64,300
주민 부담금	137,800	114,800	413,500	344,500

○ 비닐하우스☞ 내재해형07-단동-3, 가입비율(80% 경우)

(단위 : 원)

구 분	100평 (330㎡)		300평 (990㎡)	
	보험가입금액	5,253,600	5,253,600	15,760,800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계	272,200	226,900	816,800	680,700
국고 지원금	140,300	116,900	420,800	350,700
지자체지원금	28,500	23,800	85,700	71,400
주민 부담금	103,400	86,200	310,300	258,600

○ 비닐하우스☞ 내재해형07-단동-3, 가입비율(70% 경우)

(단위 : 원)

구 분	100평 (330㎡)		300평 (990㎡)	
	보험가입금액	4,596,900	4,596,900	13,790,700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비닐 특약	비닐 미특약
계	238,200	198,500	714,700	595,600
국고 지원금	122,700	102,300	368,200	306,800
지자체지원금	25,000	20,800	75,000	62,500
주민 부담금	90,500	75,400	271,500	226,300

♣ 공시 관련사항 문의 및 의견 제출은 정선군 안전건설과
(담당자 : 주창수, 전화 : 033-560-249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